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최성국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
2020. 6. 1.(월)

제목 **코로나19 관련 범죄 입단 및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 법집행 방안 시행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조 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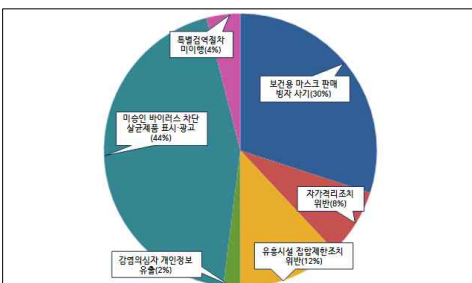
- 부산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것을 이용한 마스크 판매사기, 미승인 보건용품 판매, 자가격리 등 감염전파 차단 조치 위반 등 각종 보건 관련 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함
- 또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재범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,
-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사법 절차 각 단계에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
- 부산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하고,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집행을 할 예정임

I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 엄단

1.1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 대응 방향

- 코로나19 확산사태에 총력 대응하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방역저해사범 등 각종 보건범죄사범에 대하여 관내 경찰과 협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였음
- ※ 우리 청 코로나19 대응단 산하 보건범죄대책반 국내반(형사2부) 및 외사반(외사부)은,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 및 외사범죄의 주요 이슈별 쟁점과 법리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자료를 산하 지청에 배포하였음(3. 4. 및 3. 13.)
- '20. 5. 28. 현재까지 분청 관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로 단속되어 기소된 인원은 총 50명(42건)으로 그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, 4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<기소사건 범죄 유형별 분포>



※ 우리청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98건을 송치받아 위 42건을 포함한 68건을 처분하고, 30건을 수사 중임

②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 유형별 주요 사례

○ 보건용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건

- ▶ '20. 2.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국수출 전문업체인 것처럼 가장 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하여 홍콩인 피해자로부터 한화 약 7,240만 원(홍콩달러 약 47만 달러)을 송금 받은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, 위 사기 사범에게 제좌를 제공 하여 편취금 인출을 도운 사기방조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(3. 20.) 하는 등 SNS,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10명 구속 기소, 5명 불구속 기소

○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건(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

- ▶ '20. 4. 2.경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인 '20. 4. 7.경 격리장소를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 방문한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(남, 28세, 코로나19 음성 확정) 등 자가격리조치 위반 해외 입국자 4명 불구속 기소(5. 22.)

○ 유흥시설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건(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

- ▶ '20. 5. 8.경 부산시장으로부터 시설 이용자 간 1~2m 거리 유지 등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부산 서면 소재 감성주점 6곳의 운영자에 대하여 약식기소(5. 22.)

○ 코로나19 감염의심자 정보 유출 사건(개인정보보호법위반)

- ▶ '20. 1. 27.경 부산지역 경찰 내에서 보고된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' 보고서 상의 감염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5개 대화방에 게시한 부산○○경찰서 경위, 불구속 기소(3. 3.)

- 3 -

○ 미승인 바이러스 차단 살균제품 인터넷 표시·광고 사건(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)

- ▶ 미승인 이산화염소 성분의 살균제품을 제조·판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위 제품이 주변 1m 공간을 제공하는 살균제라고 광고한 향균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 위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살균제라고 광고한 통신 판매업자 21명을 약식기소함(5. 26.)

II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음주운전사범 법집행 강화

1 개요

- 이른바 '윤창호법'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찰의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줄자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,
- 코로나19 확산상태 기간 중 범한 반복적 음주운전 사범은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 구속 수사하도록 하고,
-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상태 기간 중 범한 음주운전 사범은 가장 처벌되도록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0. 3. 26.부터 시행 중임

② 현황 및 주요 사례(2020. 3. 26.~5. 22.)

○ 현황(2020. 3. 26. ~ 5. 22.)

- 음주운전사범 구속 6명(검찰 직접 구속 2명, 사경 구속지휘 4명)
- 코로나19 확산상태 기간 중 범한 음주운전 사범이 가장 처벌 되도록 구형을 상향하여 기소한 사례 142명

- 4 -

○ **구속수사 주요 사례**

- ▶ 음주운전으로 전과 2회에 누범 기간 중인데도, 2020. 3. 6.경 혈중알콜농도 0.246%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범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기소(4. 21.)
- ▶ 음주운전으로 전과 9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, 2020. 3. 30.경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.220%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범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기소(5. 19.)
- ▶ 2020. 3. 16.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관 및 피고인의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 3회 사범에 대해 사경 지휘 통하여 구속하여 기소(4. 14.)

○ **구형 상향 주요 사례**

- ▶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2020. 3. 6.경 혈중알콜농도 0.218%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범을 불구속 기소하고, 구형 상향한 사례(3. 30.)
- ▶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2020. 2. 22. 혈중알콜농도 0.110%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범을 불구속 기소하고, 구형 상향한 사례(3. 31.)
- ▶ 음주운전으로 전과 2회, 무면허운전으로 전과 3회 있음에도, 2020. 3. 1.경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.137%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단속된 음주·무면허운전 사범을 불구속 기소하고, 구형 상향한 사례(4. 22.)

III **코로나19 관련 지역주민 부담 경감 처분**

1 **개요**

-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여행·숙박·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, 지역주민의 구직난 또는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
-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일상의 삶 속에서 저지른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▲사건 처분, ▲공판, ▲벌금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 각 단계에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0. 3. 12.부터 시행함

2 **현황 및 주요 사례(2020. 3. 12.~5. 22.)**

- **감경된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한 사례 : 192명**
 - ▶ 허가받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람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1/2 감경된 벌금으로 약식기소함
 - ▶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청소년을 출입제한 시간 이후에 출입시킨 사안에서,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점을 감안하여 1/2 감경된 벌금으로 약식기소함
 - ▶ 체육시설업 신고 전에 헬스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안에서, 코로나19로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어 최초 예정 오픈일까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함
- **공판 중 피고인의 벌금 구형을 낮춰 준 사례 : 6명**
 - ▶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점을 참작하여, 연령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 2명을 주점에 입장시켜 재판받던 자영업자의 벌금 구형량을 30% 감경

- ▶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 급감한 점을 참작하여, 짝퉁 명품의류 판매 범행으로 재판받던 소상공인의 벌금 구형량을 20% 감경

○ **벌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 허가해 준 사례 : 40명**

- ▶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행사업체 운영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행사가 중단되어 수입이 급감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분할 납부 허가
- ▶ 노임을 지급받지 못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건설일용직노동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현장의 일감이 급감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분할 납부 허가
- ▶ 차선 변경 문제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때려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건설일용직노동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현장의 일감이 급감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분할 납부 허가

IV 향후 계획

- 부산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, 음주운전 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하고,
- 아울러 정부지원 대출 등 빙자 보이스피싱, 재난지원금 지급 빙자 스미싱 사기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범을 적극 구속 수사하고, 구형에도 적극 반영하여 엄단하는 한편,
-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☑